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치 근거 마련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41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13.

다. 회 부 일 : 2024. 6.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박물관·미술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조사·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확산을 맡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와 관련한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 그 지위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국립박물관 중 현행법에 그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 및 업무 범위 등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설립과 운영) ①·② (생략)	제10조(설립과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둔다.</u>
<u><신설></u>	<u>④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한글박물관을 둔다.</u>
③ (생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⑥ ----- ----- -----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⑤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⑦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국립민속박물관, 대한
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또는-----.

⑦ -----
-----제5항-----
-----.

⑧ -----
-----제5항-----
-----.

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근현대 역사 박물관”으로 본다.

⑩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한글 박물관”으로 본다.

⑪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

⑫ (현행 제8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0조¹⁾는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두도록 하고,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 박물관·미술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등을 정하고 있음.

동 조에 규정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직제」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은 2012년 개관한 근현대 역사 박물관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국립한글박물관은 2014년 개관하여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설립과 운영)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②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③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⑤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관련 조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중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국립전통예술중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제67조의2(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7조의3(관장) ① 역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6(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7조의7(관장) ① 한글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7조의8(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글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운영 근거 및 업무 범위 등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비한 두 국립 박물관에 대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설되는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도 기존의 대통령령의 규정을 인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사업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저작권법²⁾에

2) 「저작권법」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시설”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제3조에 따른 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조치가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두 국립박물관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전시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³⁾에 따라 행정기관 부속기관 및 직무범위는 각 부처 직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소속기관 설치를 규정하는 것은 정부조직 법령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3)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